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0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정준호 · 이연희 · 백선희
박용갑 · 임호선 · 이소영
한준호 · 채현일 · 염태영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을 “주택(「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 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 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 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u>주택</u>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가목의 세율을 표준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 ----- ----- ----- ----- ----- ----- ----- ----- ----- ----- -----. 1. ----- ----- ----- ----- ----- ----- -----주택(「부 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로 하여 해당 세월에 중과기 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u>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은 제외한다)-----</u> ----- ----- ----- -----
2.·3. (생략) ② ~ ⑤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